

노인학대 예방 정보

■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4)

■ 법적 · 제도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③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 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11 (조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3.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대표적 행위	예측 징후
--	--------	-------

신체적 학대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밥통, 냉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 시킨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뒤편 흔적 또는 상처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친구,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활동, 종교활동, 이성교제 등을 방해한다. ·‘죽이겠다’ ‘시절로 보낸다’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모욕적인 말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홍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다툼, 욕설, 큰 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원치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진다.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또는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성병 ·분노 또는 수치심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

	목욕을 시킨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허락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은행 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방 임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거주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기 방임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 ·노인 주변 환경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 징후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자기 방임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자살을 시도함.

	위협받는다. ·알코올 남용 및 자살 시도	
유 기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보건복지 콜센터 129
-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5) 서신에 의한 접수
-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시설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은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종사자와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기관 내에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수록하여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7.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8.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10.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발견과 대응방법

1. 기관 내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함 또는 신고함을 비치한다.
2. 반기별로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3.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어르신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5.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 : 전화 129), 시 · 군 · 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7.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사례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10.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한다.

■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법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9.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가능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 콜센터 129